

『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순화 및 각종 명칭 현행화

3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 관련 조문 정비(안 제6조)
- 자원봉사 센터장의 명칭 일치(안 제9조, 안 제11조)
-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규정 마련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
「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및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권장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시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서울 관악구, 경기 하남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김해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, 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,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절차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